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 선원 및 낚시어선의 이용 승객(이하 “낚시승객”이라 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영업시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 설치 낚시어선

가. 하절기 (4월1일~10월31일) : 04:00~22:00

나. 동절기 (11월1일~익년 3월31일) : 05:00~20:00

단, 영업시간내 야간영업을 하고자 하는 낚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 상 야간 운항 허가를 받고 어선 내에 하우스 및 핸드레일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낚시어선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야간항해금지 낚시어선 : 일출 30분전~일몰 30분후까지 (기상청 발표기준)

제3조(영업구역 제한)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 낚시를 하는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3톤 이상 5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 이상

2. 원자력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출입통제 또는 제한구역
- ② 낚시어선업자는 간출암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방파제 등)에 낚시인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항만관리청이 친수시설로 개방하여 낚시어선에 의한 이용객 수송을 허용한 시설은 예외로 한다).
- ③ 영업구역은 울산광역시 연안일원{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으로 제한한다. 영해의 외측한계 기준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다.

제4조(야영금지)

낚시어선업자가 당해 낚시어선에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안내할 수 있는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경우에 그 낚시승객이 야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자가 지역여건상 낚시승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낚시어선을 야영장 주변에 대기시키고 낚시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유어질서 확립과 낚시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

낚시어선업자는 유어질서의 확립과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면허 어장에 뗏목 등 잡종선(널빤지, 합성수지류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낚시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명안전을 위한 장비착용)

인명안전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낚시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승객을 안내할 경우에는 낚시승객과 상호연락 체계(선주, 선원, 낚시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낚시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낚시승객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시킨 후 출항하여야 한다.
- 낚시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있어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소방서 등에 인명대피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긴급상황시 비상탈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낚시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는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단. 출입항신고기관(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⑥ 대행신고소 출입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까지 경찰관 상주 출입항 신고기관(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에 전화 등 유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승선인원 및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낚시승객 준수사항)

- ① 낚시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있어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3. 영업시간 외 항해, 영업구역 외 지역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4. 승전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②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구의 관할수역 내의 낚시장소에 낚시승객을 안내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고시에 따른 영업시간 및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낚시어선 운항 및 낚시승객의 안전상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은 선내 주류(주세법상 정의 참조)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04호)는 폐지한다.